

군포시의회 공고 제 2021 - 13호

##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장경민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66조의2 및 「군포시의회 회의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5월 18일

###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1년 5월 2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6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9,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js9695@korea.kr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1부.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장경민 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 |  |
| 번 호 |  |

발의연월일 : 2021. 5. .

발 의 자 : 장경민, 성복임, 이견행,  
홍경호, 신금자, 이길호,  
이희재, 김귀근, 이우천

## 1. 제안이유

- 군포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1조~제2조)
- 나. 시장 및 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제4조)
- 다.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 (안 제5조~제6조)
- 라.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및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 (안 제7조~제8조)
- 마.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한 규정 (안 제9조~제10조)

## 3.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군포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포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돌봄 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군포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 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군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복지 증진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
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사업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행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군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
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